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2000년 총선사민연대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87 안국빌딩 2층

대표자 박상중

(전화번호 732-0413, 팩스번호 733-0413)

### 위 청구인들 대리인

#### 1. 법무법인 한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의 1 우서빌딩 45층

담당변호사 백승헌, 조광희

(전화번호 3487-3000, 팩스번호 523-5956)

#### 2. 법무법인 시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고려빌딩 3층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석연

(전화번호 522-4706, 팩스번호 3663-9655)

#### 3. 변호사 이오영, 이인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6층

(전화번호 525-3660, 팩스번호 525-3663)

청 구 취 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 6265호) 제58조 및 제59조는 각 헌법에 위  
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4조 선거권

### 침해의 원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 제58조 및 제59조

### 청 구 이 유

#### 1. 당사자들의 지위

청구인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라고 합니다)는 부패, 무능한 정치인을 유권  
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왜곡된 정치구조의 개혁 및 국민주권찾기 시민행동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 2.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총선연대의 출범

총선연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역주의의 악습과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에 터잡은 정치,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무능한 정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 소속 정당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정치를 유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정치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2000. 1. 12. 설립된 조직입니다(갑제1호증 총선연대규약, 갑제2호증 총선연대 발족 선언문 각 참조).

총선연대는 정치개혁에 대한 전국민의 소망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국의 473개 시민·사회단체(2000. 1. 26. 기준)가 자주적으로 연대한 조직으로서(갑제3호증 총선연대 참가단체 명단 참조), 참가단체 대표 전원이 총선연대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외에 법률자문 및 변론지원을 자원한 양심적인 변호사로 구성된 '500인 변호인단',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유권자운동에 대한 각종 자문을 수행하는 '정책자문단', 여론조사 기관이 제공한 표본에 따라 연령별, 계층별, 성별, 연고지별 구성비에 따라 구성된 '유권자 100인 위원회'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갑제4호증 부패무능정치인 유권자심판운동 계획 중 조직체계 참조).

총선연대의 활동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갑제5호증 총선연대의 공천부적격자 선정 기준과 절차 참조)에 따라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 발표하는 등 공천반대운동을 실천하고 만약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② 위와 같은 유권자심판운동을 가로 막고 있는 구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며, ③ 낡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을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 ④ 권역별 실천체계를 갖춘 전국적 운동조직을 형성하여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공정선거감시운동과 협력적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 나. 2차에 걸친 공천부적격자명단발표와 이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총선연대는 위와 같은 활동목적에 따라 2000. 1. 24. 1차로 총 6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공천반대인사로 선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 명단과 선정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갑제6호증 공천반대의원 명단 참조). 위와 같은 공천부적격자명단발표는 그 동안 구시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적 냉소주의의 늪에 빠져 있던 대다수 유권자의 폭발적인 지지, 동조를 얻게 되었고, 총선연대는 2000. 1. 30. 전국 7개 도시에 걸쳐 “제1차 국민주권 선언의 날” 행사를 열어 유권자 행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천부적격인사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에 전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갑제7호증 유권자 선거혁명으로 가는길 참조). 그리고 총선연대는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원외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반대자 선정작업에 착수하여 2000. 2. 2. 2차로 42명의 공천부적격자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갑제9호증 총선연대 공천반대 2차 명단 발표 기자회견 자료 참조).

총선연대의 위와 같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지지 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80%를 넘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갑제10호증 [ 여론조사결과 ]참조), 총선연대가 개설한 홈페이지(www.ngokorea.org)의 접속건수는 2000. 2. 13. 현재 386,919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등 양심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유권자심판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갑제11호증의 1 내지 3 [ 각 성명서 ] 각 참조).

#### 다. 유권자심판운동을 가로막는 구 선거법의 독소조항의 폐지를 위한 노력

시민사회단체의 유권자심판운동이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가운데 유권자심판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구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선거법은 그 본래의 목적이 주권자인 국민의 최대한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쟁자간에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정하여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구 선거법은 공명 선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의 규제조항을 두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행위로 축소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구 선거법상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선거법 조항을 열거하면 ①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58조, 제59조 및 제254조, ② 사전선거운동은 물론이고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제87조, ③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일체의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 ④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제94조, ⑤ 통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사가 포함된 간행물의 배부를 금지한 제95조, ⑥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제98조, ⑦ 구내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제99조, ⑧ 녹음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제100조, ⑨ 각종 집회, 연설회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제101조 내지 103조 및 제105조, ⑩ 서명·날인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제107조 등 헤아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